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63
----------	-----

2019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김용석 의원 외 11명
- 나. 제 안 일 : 2019년 5월 24일
- 다. 회 부 일 : 2019년 5월 30일
- 라. 상 정 일 :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사립 특수학교까지 학교보안관을 배치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국공립 및 사립 특수학교에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19.6.4.~6.1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을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 특수학교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u>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u>를 말한다.</p> <p>3.·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u>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u>를 말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¹⁾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²⁾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현재(2019년) 3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70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국·공립 특수학교에서 1,205명이 근무하고 있음.

-
-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이 조례는 (중략)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특수학교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총 30개소가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사립 특수학교는 19개소임.

※ 공립 전환 특수학교 : 사립 특수학교 중 1개소가 공립으로 전환예정(2019.9.)에 있음.

〈 서울시 특수학교 현황 (2019.3.1.현재) 〉

국립	공립	사립	계	2019.9.1. 변동 예정
3교	8교	19교	30교	국립 3, <u>공립 11</u> (신설2, 공립전환1), 사립 18교, 총 32교

※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제55조(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서울시 소재 사립 특수학교 현황 〉

	학교명	설립구분	설립유형	주야구분	설립일	위치	구분
1	광성하늘빛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99.11.08.	송파구 풍납동	남녀공학
2	누리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98.04.29.	동작구 대방동	남녀공학
3	교남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83.01.25.	강서구 화곡동	남녀공학

	학교명	설립구분	설립유형	주야구분	설립일	위치	구분
4	다니엘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74.12.13.	서초구 내곡동	남녀공학
5	밀알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97.03.01.	강남구 일원동	남녀공학
6	서울새롬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69.07.28.	관악구 봉천동	남녀공학
7	서울동천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79.12.12.	노원구 하계동	남녀공학
8	서울삼성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83.03.03.	동작구 상도동	남녀공학
9	서울애화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75.12.01.	강북구 미아동	남녀공학
10	서울인강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71.03.02.	도봉구 도봉동	남녀공학
11	성베드로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74.05.23	구로구 향동	남녀공학
12	수도사랑의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98.01.26.	종로구 사직동	남녀공학
13	연세대학교재활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64.02.28.	서대문구 신촌동	남녀공학
14	주몽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85.03.20.	강동구 상일동	남녀공학
15	한국구화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62.07.20.	강동구 고덕동	남녀공학
16	한국육영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92.09.23.	송파구 장지동	남녀공학
17	한빛맹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70.12.05.	강북구 수유동	남녀공학
18	은평대영학교	사립	단설	주간	1981.03.12.	은평구 구산동	남녀공학
19	서울효정학교	사립	단설	주간	2017.09.01.	강북구 수유동	남녀공학

< 학교보안관 추진경위 >

- 2010년 :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456호, 2010.11.24.)
- 20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시 ⇒ 운영업체 ⇒ 학교)
- 20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시 ⇒ 학교)
- 2013년 : 50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
- 2013년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재계약시 반영)
- 2013년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행 운영(서울시시우회 협약)
- 2015년 : 10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
- 2016년 :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근무연령, 직무평가 등) 수립·시행
- 2017년 : 6개교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
- 2017년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조례 제정
- 2018년 : 학교보안관 배치 확대(공립 특수학교) 관련 조례 개정
- 2019년 : 공립 특수학교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 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고, 약물치료 병행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학생의 내부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상황과 불편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2018년 3월)에서 당초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배치했던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다만, 서울시의 재정부담 증가와 학교보안관 배치 대상의 지속적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현행 학교보안관 체계(1개교 당 2명의 학교보안관 + 학교여건에 따른 1인 추가배치)와 유사한 배치현황을 구축한 2015년부터 학교보안관 관련 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2015년 217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318억원 규모로 연평균 10.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 최근 5년간 학교보안관 예산 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증감
21,793	22,643	24,361	28,603	31,830	2,007
-	3.9%	7.6%	17.4%	11.3%	10.0%

· 2017년에서 2018사이 최저임금이 16.8% 증액되어 예산액이 크게 증가했음.
 · 2019년 특수학교 11개교 6억7천6백만원(2.4%) 증액비용 포함

- 최저임금의 인상과 금년의 공립 특수학교의 보안관 배치 및 본 개정안으로 인한 사립 특수학교의 보안관 배치는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보안관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이며, 인건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차를 거듭할수록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학교보안관의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각 학교별 2명씩 배치 후 2013년, 2015년, 2017년에 학교 당 학교보안관을 3명씩 배치하는 학교가 66개소로 늘어났고, 2019년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가 추가 배치되었으며, 사립 초등학교도 학교보안관 배치를 원하고 있는바,

〈 서울시 초등학교 개황(2018.9.기준) 〉

구 분	총 계	국 립	공 립	사 립
학교 수	603	2	562	39
학급 수	18,585	59	17,733	793
학생 수	424,800	1,284	402,366	21,150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보안관 지원은 지속적인 학교보안관의 배치대상 확대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데, 교육현장의 필요와 서울시 재정을 감안한 학교보안관의 장기적인 운영 및 재정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사업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함.

나. 주요내용

- 안 부칙 시행일을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63 관련
----------	-----------

제안연월일 : 2019년 6월 28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사업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부칙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u>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u>를 말한다.</p> <p>3. ~ 4.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u>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u>를 말한다.</p> <p>3.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 날</u>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의)</p> <p>1. (현행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4.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u>2020년 1월 1일</u>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u>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u>를 말한다. 3. ~ 4. (생략)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u>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u>를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